「2026년 서울창업허브M+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」 시행 공고

서울경제진흥원(SBA) 서울창업허브M+에서는 입주기업의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『2026년 서울창업허브M+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』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창업허브M+ 입주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16일
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

1. 사업개요

□ **사업명: 2026년 서울창업허브M+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**

□ **지원규모:** 5개사 내외(기업당 300만원 이내)

□ **지원대상:** 서울창업허브M+ 입주기업

□ **협약기간:** 협약일 ~ 2027. 2. 28. 까지 (사업비 사용 가능 기간)

□ **지원내용:** 기업역량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바우처 제공

※ 총 사업비 중 지원금은 신청분야에 활용

※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 비용, 회계 정산 비용은 기업 자부담(필수)

신청분야	내용(안)
경영·전략	조사 및 컨설팅 (해외 바이어조사, 동향분석, 경영컨설팅 등)
	브랜드 개발 및 관리
	인재채용 소요비용 (정규직 종사자 헤드헌팅 비용, 채용사이트 이용료 등)
	정보보호 관련 솔루션 도입,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등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등
제품개발 및 고도화	시작품 및 시제품, 금형제작 등
	소프트웨어 고도화 (앱 등 S/W 개발)
	PCB 제작 (PCB 설계변경, SoC 제작 등)
	기구 설계 고도화 (기구설계 제작 및 변경 등)
지식재산권·인증	지식재산권 권리화(국내·해외 특허, 디자인, 상표, 실용신안 출원)
	국내외 시험·분석·규격인증
	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
	지식재산권 분쟁,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관련 컨설팅 등
홍보·마케팅	전시회 참가(해외 및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)
	국내/해외 마케팅 (SNS마케팅, 검색광고, 영상 제작, 언론보도 등)
	디자인 개발 (홍보자료, 홈페이지, 제품 및 패키지 등)
지원제외	- 단순 기업운영 비용 및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간접비용, 직원 인건비, 자산 취득비용,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등은 지원하지 않음 -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-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

※ 예산 범위 내 복수 신청이 가능하며,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 분야 신청의 경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

2. 추진절차

참여기업 모집	》	선정평가위원회	》	중복지원검토	》	협약체결
‘26.11.16. ~ 11.30.		‘26.12.3.		‘26.12.3. ~ 12.10.		‘26.12.11. ~ 12.16.

》	지원금 지급	》	사업운영	》	회계정산	》	잔액반납
	‘26.12.16. ~ 12.23.		~ ‘27.2.28.		~ ‘27.3.15.		~ ‘27.3.31.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사업 신청

□ **공고 및 접수기간:** ‘26. 11. 16.(월) ~ ‘26. 11. 30.(월)

□ **신청자격:** 서울창업허브M+ 입주기업

□ **접수방법 및 제출서류**

항목		세부 내용
접수방법		▸ **SBA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**(https://mplus.startup-plus.kr) 접수 * ‘26. 11. 30.(월)까지 홈페이지 접수 건에 한함 *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접수 지연 ·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
제출 서류	**필수**	▸ **사업신청서**[별첨1.양식] ▸ **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서류**(외부전문수행기관 최종견적서 必)
	선택	▸ 기업 소개 및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▸ 경영성과 증빙자료(추진계획서 기재내용에 따른 선택자료)

4.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

□ **평가방법**

- 적격검토: SBA 담당자의 서류적격성검토
- 서류평가: 선정평가위원회(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)를 통한 추진계획서 등 평가

□ **평가기준(안)**

구분	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정성 평가	기업역량(20)	· 기업 보유 역량, 제품 기술성 등	20
	추진계획의 적정성(40)	·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20
		· 적정 외부전담기관 선정 및 예산집행계획 타당성	20
	지원 필요성(40)	· 최종 목표 달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	20
		·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발전가능성	20
합 계			**100**

□ **선정기준:**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값 산출(최고/최저 제외)

- 산술평균 값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※ 선정된 기업의 중도 포기 등으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지원 가능

※ SBA 및 타 기관에서 유사사업과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사전 검증 진행 후 최종 선정 예정

5. 협약체결

☐ **협약대상:** 선정평가 통과 기업 중 타 기관 중복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

- 신청기업 중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산술평균 값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대하여 2026년 한 해 동안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·유사 사업(바우처 등)에서 중복 지원 받은 이력 확인

☐ **협약방식:** 이폼사인을 활용한 전자협약

☐ **협약규모:** 기업당 서울시 지원금 최대 300만원 이내, 보증보험 및 회계정산비용 기업부담

- 서울시 지원금: 최대 300만원 이내
- 기업부담금: 이행보증보험 증권, 회계정산비용 (필수)

☐ **지급방식:** 선 지원금 지급, 협약기간 종료 후 회계정산 후 잔액 반납

※ 지원금 지급 전, 협약 이행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(지원금 전액, 협약기간+2개월) 제출(필수)

※ 이행보증보험증권 기간은 협약종료 후 정산 및 잔액 반납기간을 고려하여 협약기간 +2개월로 설정함

5. 사업운영

☐ 대내외 환경 변화로 추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변경 신청 가능

- 변경 신청 공문 및 신청서(안), 세부 견적서 등 본 사업의 선정 기준에 따라 재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할 수 있음
- 단, 추진계획의 변경은 동일한 신청분야 내에서만 가능함

6. 결과보고 및 정산

☐ 협약기간 종료 후, 사업추진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 제출, 위탁회계정산 실시

※ SBA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정산

※ 회계정산결과에 따른 부적정 집행 및 미집행 금액(발생이자 포함)은 서울경제진흥원 계좌로 환수 예정

사업 결과보고 시, 제출서류	
1	결과보고서(추진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, 핵심성과 등) ▸ 시제품 등 성과물(산출물) 사진, 도면은 고해상도 이미지로 별첨
2	사업비 정산 보고서(위탁회계정산) - 회계정산은 SBA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위탁정산/잔액반납
3	외부전문 수행기관의 결과보고서(과업지시서, 산출물, 계약서 및 정산서 등 포함)

7. 기타사항

☐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□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
□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8. 문의처

담당자	연락처	이메일 주소
서울경제진흥원 클러스터혁신팀	02-6958-9073	(문의) hkkim@sba.seoul.kr (사업신청) https://startup-plus.kr

※ 공고문 내 붙임 자료 목록

[붙임1] 기업 지원 Q&A

[붙임2]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가능 항목 안내

[붙임3] 사업비 정산 안내

[붙임1] 기업 지원 Q&A

Q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지원 서비스가 궁금합니다.

⇒ **[붙임2] 지원 대상 서비스 항목**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고문 내 명기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, 추진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평가를 통해 지원적격 여부가 판단됩니다. 본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, 기업지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세부 지원내용 상 명시여부에 제약 없이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가 300만원 이상이어도 되나요?

⇒ 물론 가능합니다.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규모(금액)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
단, 300만원 이상 사업을 수행하셔도 지원금은 3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.

Q 기업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
⇒ 협약체결 완료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이 완료되면 제출한 사업비 계좌로 지원금이 바로 선지급됩니다. (다만, 사업비 계좌는 기업 내 다른 계좌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별도계좌여야 합니다.)

Q 사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내용/예산편성내역 변경이 가능한가요?

⇒ 별도 절차에 따라 사업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

-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안내를 받으신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운영 기간 중 1회에 한하며, 기 승인받은 추진 계획서와 동일한 신청분야 내에서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필요 시 별도 심사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
[붙임2] 맞춤형 바우처 지원 가능 항목 안내

□ 지원 대상 서비스 항목 ※ 명기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,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
연번	대분류	정의	내용(예시)
1	**R&D기획 및 조사 컨설팅**	정부 및 지자체 R&D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단계 연관 서비스	연관 특허권 및 기술 사전 조사·분석,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획 관련 컨설팅 R&D관련 조사·일반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
2	**지식재산권 권리화, 국내외 시험 및 규격인증**	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인증 대행 등	지식재산권 출원 및 IP 전략 컨설팅, 분쟁 지원 등, 시험 및 규격 인증 획득 컨설팅 및 인증·시험 비용 등 특허·지재권·시험 관련 분야 전반 연관 서비스
3	**시제품 제작**	기술개발 구체화 지원	금형, 설계 등 시제품 제작 관련 서비스
4	**투자 유치 지원**	기업 외부자원 유치 지원	기업가치평가, IR자료 제작, IPO컨설팅 등
5	**해외전시회 지원**	해외 전시회 참가 관련 제반비용 지원	해외 인증 전시회 부스비 및 장치비, 운송비 등 전시회·행사·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연관 서비스
6	**조사·일반 컨설팅**	정보 조사 및 기업경영 연관 컨설팅 지원	파트너·바이어 발굴조사, 해외시장조사, 소비자 리서치, 경쟁제품 동향조사,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, 바이어DB 타깃 마케팅,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, 해외진출 및 기업경영 조사·일반 컨설팅 분야 연관 서비스
7	**통번역**	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	계약·법률 문서, 소프트웨어콘텐츠, 게임·모바일앱 콘텐츠, 비즈니스·기술문서,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연관 서비스 * 단,통·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
8	**해외영업**	해외진출 관련 필요 지원	계약서 및 통관·선적 필요 서류 작성 등 서류 대행, 단기수출보험, 수출신용보증, 환변동보험 등 수출보험료, 해외 통관 등 수출관련 법률 자문료 등 연관 서비스
9	**브랜드**	브랜드 개발·관리 지원	신규 브랜드 개발·관리, 브랜딩 전략 수립 컨설팅, CI및 BI개발, 네이밍 등 브랜드 관리 전반 연관 서비스
10	**홍보·광고**	기업·제품·브랜드 홍보 및 광고 지원	온·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, 바이럴마케팅, 홍보매체 운영비(홈페이지, SNS 등) 등 광고매체 활용 연관 서비스
11	**디자인**	디자인 개발 지원	제품 및 시각(포장) 디자인 개발비 등 일러스트 작업이 수행되는 디자인 연관 서비스
12	**인재채용 소요비용**	기업 필요 인력 충원 관련 서비스 이용 지원	신규 및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취업포털 이용, 헤드헌팅, 오프라인 채용 지원 참가(박람회 등) 등 연관 서비스 * 인건비로 집행 불가

[붙임3] 사업비 정산 안내 ※ 협약체결 후 상세 사업운영지침 안내 예정

□ 지원 협약서 내 명기된 정산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비 정산 실시

- 사업 신청 후 지원기업을 선정, 해당 기업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양자협약 체결
- 사업운영 및 정산 기준이 명기된 협약서에 근거하여 사업 수행 및 정산 청구

□ 사업비 정산 시 준수사항

- 총 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
- 이행보증보험료 및 회계정산수수료는 기업 부담
- 사업비 정산 관련 조정 및 변경사항 발생 시, 반드시 서울경제진흥원(SBA)과 사전협의 및 승인 진행

□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안내

① 기업별 사업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 기한 이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위탁정산 시행, 기업지원단 결과보고 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

② 선정기업은 2027년 3월 15일까지 SBA에 사업결과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

- 2025 맞춤형 바우처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
- 수행기관(세부 기업지원 서비스 수행한 기관) 증빙서류
- 일부 기업지원서비스(지재권 권리화, 해외박람회 참가 등)의 경우 별도 증빙 양식 제출

③ SBA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시행

- 일정 및 지정 회계법인은 별도 안내 예정
- 2027년 3월 15일까지 회계감사 완료 및 SBA에 회계감사보고서 제출

④ '부적정' 사업비 및 지원금 잔액 등 환수 조치 (지원금 및 발생이자 일괄 반납)

⑤ 선정기업의 추진 사업이 협약기간 내 완료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(협약 기간 종료 후 성과물이 나오는 경우, 청구 불가)

⑥ 선정기업은 사업비 사용·관리 관련 자료제출 요청 시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